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23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등 정비	2

I. 개요

1.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8. 29.
- (3) 회 부 일 : 2025.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보다 협소하게 규정하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등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28조제6항),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결정 취소의 사유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7항 제3호).

현행	개정안
제28조(과징금) ① ~ ⑤ (생략)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과징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8조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4조제1항1)에 따른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시설의 운영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결정의 근거와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²⁾.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동물실험시설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7.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그런데, 현행법 제28조제6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의 사유는 「행정기본법」 제29조³⁾와 달리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 사유 비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행정기본법」 (제29조)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u>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u>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②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⑧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정안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28조제6항),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결정 취소의 사유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안 제28조제7항),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의 사유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안 제28조제7항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 취소의 사유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신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안 제28조제6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시간적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개정안은 납부기한 연기 등 허용 사유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사유 등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4